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10003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7. 5. 17.

판결 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3. 16. 접수 제13765호, 2007. 5. 30. 접수 제27959호, 2011. 5. 24. 접수 제31894호로 한 B의 1-1번, 1-2번, 1-3번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종단 A은 2002. 7. 22.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3. 1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2.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3. 16. 접수 제13765호로 C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제1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7. 5. 10.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5. 30. 접수 제27959호로 피고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제2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2011. 5. 19. 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5. 24. 접수 제31894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제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이하 제1, 2, 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대표자가 없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52조),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원상생의 D를 총지로 하고, 인간개조,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정관을 갖고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 E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등 비법인사단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총유재산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소제기에 관한 원고 총회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0,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19조 제4호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6. 8. 12.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에게 편취당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전국 각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사소송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자 F은 종단 A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데, G 종단의 분열을 기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독자적 종교단체인 피고를 만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단 A에서 피고로 명의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가로채었는바,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무효인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단 A에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단 A은 2007. 3.경 그 명칭을 C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가, 2007. 5. 10. 임시총의회를 개최하여 그 회의 결과에 따라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고 제2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주사무소 이전에 따라 제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치는 등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원고는 기존 종단 A과는 달리 2015. 11경 피고의 기존 회원들 중 일부가 별도로 조직한 종교단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용균

판사정윤주

판사이범용

별지